

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114
----------	-----

2022년 9월 28일
보건복지위원회

I. 심사경과

1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2년 8월 29일 강석주 의원의 56명
2. 회부일자 : 2022년 9월 2일
3. 상정일자 : 제314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

【2022년 9월 23일 상정·의결(원안 가결)】

II. 제안설명의 요지 (강석주 의원)

1. 제안이유

- 보육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와 보육교직원의 활동 장려 등을 도모하기 위해 보육주간을 정하고 관련 행사와 교육·홍보사업 등을 실시하도록 하여 양육친화적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.
- 또한 모범 교직원 등에게 표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매년 10월 넷째주를 보육주간으로 하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·홍보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. (안 제26조 신설)
- 보육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함. (안 제27조 신설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참조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Ⅲ. 검토보고의 요지 (수석전문위원 박지향)

1 조례안의 개요

- 동 개정안은 매년 10월 넷째주를 보육주간으로 정하고, 그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·홍보사업의 실시 및 지원, 모범 교직원 등에 대한 표창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임.

2 주요사항 검토

□ 보육주간의 지정 및 행사 등 실시·지원(안 제26조 신설)

- 개정안은 보육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와 보육교직원의 활동 장려 등을 통한 양육친화적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육주간을 매년 10월 넷째주로 규정하고, 보육주간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·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음.

현행	개정안
<신설>	제26조(보육주간) ① 시장은 보육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와 보육교직원의 활동 장려 등을 통한 양육친화적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10월 넷째주를 보육주간으로 한다.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육주

현행	개정안
	<u>간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</u> <u>· 홍보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.</u>

- 기념일이나 기념주간의 지정과 관련하여 국가대통령령으로 「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」(이하 「기념일규정」)¹⁾이 시행되고 있으며, 기념일 지정 시 고려할 기준²⁾을 규정(별표²⁾하고 있음.

[붙임 1 : 기념일의 지정기준 참조]

- 해당 규정은 국가의 기념일을 지정하기 위한 기준이나, 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15조의2³⁾에 따른 사회복지의 날⁴⁾과 같이 국민복지 등 주요 국가시책에 대한 기틀을 확립하는 데 의의가 큰 날을 기념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라 저출생 대응 및 아동 양육 부담 해소 등을 위한 보육

1) 「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」제1조(목적) 이 영은 정부가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(紀念日) 및 기념주간 등을 지정하고 그 기념일에 거행되는 전국적 또는 지역적 규모의 의식(儀式)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) 「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」제2조(기념일 등) ② 정부가 기념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고려할 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
3) 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15조의2(사회복지의 날) ① 국가는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하고, 사회복지의 날부터 1주일을 사회복지주간으로 한다.
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4) 사회복지의 날(9월 7일)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(1999년 9월 7일)을 계기로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사회복지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해 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15조의2에 따라 지정된 법정기념일임.

정책의 중요성을 알리고 그 가치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보육교직원들의 활동 장려 등을 위한 보육주간의 지정은 그 필요성이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할 것임.

- 또한 현재 조례를 통해 별도로 서울특별시만의 기념일 및 기념주간을 정한 것은 ‘시민의 날’과 ‘3·17민주의거 기념일’로 각각 「서울특별시 시민의 날 조례」와 「서울특별시 3·17민주의거 기념 조례」를 근거로 하고 있음.

구분	시민의 날	3·17민주의거 기념일
조례명	「서울특별시 시민의 날 조례」	「서울특별시 3·17민주의거 기념 조례」
날짜	10월 28일	매년 3월 17일
내용	서울 정도 600년을 기념하여 기념일 지정 및 행사 실시 근거 마련	3·17민주의거를 기념하고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·발전 위해 기념일 지정 및 행사 실시 근거 마련
조례 제정일	제정·시행 1994. 10. 25.	제정·시행 2021. 7. 20.

- 따라서 「지방자치법」 제28조⁵⁾에서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비추어 볼 때, 서울특별시의 사무 범위인 주민의 복지증진⁶⁾에 해당하는 주요 정책

5) 「지방자치법」 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6)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

중 하나인 보육에 대한 기념주간을 지정하여 그 취지에 맞는 행사 등을 추진하려는 동 개정안은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.

- 한편 보육주간을 매년 10월 넷째주로 정한 것은 통상 3월에 입학하여 1학기를 보내고 9월에 2학기가 시작되는 어린이집의 일정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10월로 하여 보육교직원 및 이용아동, 학부모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, 보육인의 날 행사⁷⁾ 역시 이러한 이유로 10월 경에 추진해 왔다는 점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. [붙임 2 : 서울특별시 「보육인의 날」 행사 현황 참조]

- 또한 개정안은 2021년 12월에 수립된 “2021~2025(제4차) 서울시 보육 중장기 마스터플랜”⁸⁾에서 보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전환 등 보육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신규로 계획한 “보육주간 선포 및 보육문화 행사 개최” 사업의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임.

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2. 주민의 복지증진

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. 사회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 및 관리

라. 노인·아동·장애인·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

- 7) ‘보육인의 날 행사 지원’ 사업은 2008년부터 시행되었으며, △보육사업 유공자 표창, 우수 보육프로그램 및 보육사진 시상, △우수 보육프로그램 및 보육사진 입상작 전시, △보육관련 동영상 시연 및 식전행사(공연) 등을 서울시어린이집연합회 분과위원회 등이 번갈아가면서 맡아 시비 보조금(일부 자부담 별도)으로 수행해 왔으며, 현재는 현행조례제22조제1항제11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근거가 규정되어 있음.

- 8)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96호,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-20607(2021.12.21.)

<‘서울시 보육 중장기 마스터플랜’ 중 보육주간 관련 내용>

V. 민관협력체계 구축 및 활용

보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전환 등 보육문화 확산

- 보육포럼(토론회) 개최 **신규**
 - 시 기 : 매년 10월 중(‘보육인의 날’ 2부 행사로 개최) ※ 1부 행사: 시장 표창수여등
 - 참석대상 : 부모, 보육교직원, 보육관련 전문가 등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
 - 개최방법 : 온/오프라인의 병행 개최로 다양한 계층의 관심 및 참여 유도
- **보육주간 선포 및 보육문화 행사 개최** **신규**
 - 매년 ‘보육인의 날’ 행사 주간을 지정, 연합회 등 단체별 부대행사 개최

▶▶▶ 보육 문화 활성화를 통한 보육에 대한 국가 사회적 관심 제고

보육주간의 지정 및 행사 등 실시·지원(안 제27조 신설)

- 개정안은 모범 보육교직원이나 보육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표창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.
- 이는 표창을 통해 보육교직원등에 대한 격려와 보육현장의 사기를 높이고 보육전문가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시키기 위한 것이 그 취지가 인정된다 하겠음.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27조(표창) 시장은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보육교직원 또는 보육발전에 관하여 현저

현행	개정안
	<p><u>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「서울특별시 표창 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</u></p>

3 종합 의견

- 본 개정안은 매년 10월 넷째주를 보육주간으로 정하고, 그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·홍보사업의 실시 및 지원, 모범 교직원 등에 대한 표창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와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.

<붙임1> 기념일의 지정기준(제2조제2항 관련) : 「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」(별표 2)

■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[별표 2] <신설 2020. 8. 18.>

기념일의 지정기준(제2조제2항 관련)

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기념일로 지정할 수 있다.
 - 가. 국가의 정통성을 확립하는 날 또는 민족정기를 널리 알리거나 호국정신의 뜻을 기리는 날
 - 나. 과학기술·경제발전·국민복지 등 국가 주요 시책에 대한 기틀을 확립하는 데 의의가 큰 날
 - 다. 문화예술의 창달과 전통적 윤리가치의 계승·확립을 위해 국민적 인식을 같이 하는 날
 - 라. 국제적으로 인식을 같이하여 기념하고 있는 날
 - 마. 그 밖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기념일로서 지정할 가치가 있는 날

2.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념일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.
 - 가. 의의나 성격이 기존 기념일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
 - 나. 의의나 성격이 특정 지역, 일부 집단 및 개별 이익단체 등에만 국한되는 경우
 - 다.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서 주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 - 라. 그 밖에 민간자율성 신장이 요구되거나 순수 민간 분야의 기념일인 경우

<붙임> 서울특별시 「보육인의 날」 행사 현황

날짜	주요내용	장소	참석자	비고
2021.10.28.(목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대면 및 비대면 형식 병행 개최 – 보육사업 유공자 표창 및 공모전 입상작 상장 수여 – 안심보육 실천 MOU (서울시·어린이집연합회) 	서울시청 다목적홀	서울시어린이집연합회 회장단 표창수상자 등 50여명	서울시 유튜브 채널을 통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실시간 영상 제공
2020.10월 중.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보육사업 유공자 표창 ●우수 보육프로그램 및 우수 보육사진 선정 ●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서울시 선진 보육사업 동영상 제작 			코로나19로 행사 미개최 보육유공자 표창
2019.10.28.(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보육유공자 표창 및 공모전 상장 수여 ●우수 보육 프로그램전, 우수 사진전 ●제로페이활성화 시-보육단체 MOU ※ 식전행사 : 축하공연 	서울시청 다목적홀	어린이집원장 보육교사 보육관계자 등 600여명	
2018.12.20.(목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보육유공자 표창 및 공모전 상장 수여 ●우수 보육 프로그램전, 우수 사진전 ●샌드아트 공연 (보육교사의 하루) ※ 식전행사 : 축하공연 	서울시청 다목적홀	어린이집원장 보육교사 보육관계자 등 500여명	
2017.11.15.(수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보육유공자 표창 및 공모전 상장 수여 ●우수 보육 프로그램전, 우수 사진전 ●보육영상물 상영 ※ 식전행사 : 축하공연 	우리은행 본점 대강당	어린이집원장 보육교사 보육관계자 등 700여명	
2016.10.20.(목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보육유공자 표창 및 공모전 상장 수여 ●우수 보육 프로그램전, 우수 사진전 ●영상물 상영 '행복이 가득한 서울시 이야기' ※ 식전행사 : 축하공연 	우리은행 본점 대강당	어린이집원장 보육교사 보육관계자 등 500여명	
2015.10.22.(목) ~10.23.(금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토론회 개최 : '15.10.22.(목) – 주제 : '부모교육의 중요성 및 의무화 준비' ●유공자 시상식 : '15.10.23.(금) – 보육유공자 표창 및 공모전 상장 수여 ●다문화 체험 및 전시 : '15.10.22.~10.23 – 다문화 체험 및 열린어린이집 우수사례 전시 	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 서울시청 다목적홀 시민청	어린이집원장 보육교사 등	
2014.11.13.(목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보육유공자 표창 및 공모전 상장 수여 ●보육영상물 상영 ※ 식전행사 : 축하공연 	우리은행 본점 대강당	어린이집원장 보육교사 보육관계자 등 600여명	
2013.10.30.(수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보육유공자 표창 및 공모전 상장 수여 ●파워풀! 서울시 보육영상물 상영 ●아동학대예방 및 윤리강령 선언서 낭독 ※ 식전행사 : 축하공연 	우리은행 본점 대강당	어린이집원장 보육교사 보육관계자 등 600여명	
2012. 9.19.(수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보육유공자 표창 및 공모전 상장 수여 ●보육영상물 상영 ※ 식전행사 : 축하공연 	우리은행 본점 대강당	어린이집원장 보육교사 보육관계자 등 600여명	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VI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강석주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114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2년 08월 29일

발 의 자: 강석주, 경기문, 곽향기, 김경훈, 김규남, 김기덕, 김길영, 김동욱, 김영옥, 김용일, 김원중, 김원태, 김재진, 김지향, 김춘곤, 김형재, 김혜영, 김혜지, 남창진, 도문열, 문성호, 민병주, 박상혁, 박 석, 박성연, 박영한, 박춘선, 박칠성, 박환희, 서상열, 서호연, 소영철, 송경택, 신동원, 신복자, 심미경, 왕정순, 유정인, 윤기섭, 윤영희, 이병도, 이상욱, 이숙자, 이영실, 이원형, 이종태, 이종환, 이효원, 임만균, 최기찬, 최민규, 최유희, 최진혁, 한 신, 홍국표, 황유정, 황철규 의원(57명)

1. 제안이유

- 보육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와 보육교직원의 활동 장려 등을 도모하기 위해 보육주간을 정하고 관련 행사와 교육·홍보사업 등을 실시하도록 하여 양육친화적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.
- 또한 모범 교직원 등에게 표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매년 10월 넷째주를 보육주간으로 하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·홍보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. (안 제26조)

나. 보육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함. (안 제27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영유아보육법 ,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

다. 기타 : 신 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 및 제2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6조(보육주간) ① 시장은 보육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와 보육교직원의 활동 장려 등을 통한 양육친화적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10월 넷째 주를 보육주간으로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육주간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·홍보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27조(표창) 시장은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보육교직원 또는 보육발전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「서울특별시 표창 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신 설></p>	<p>제26조(보육주간) ① 시장은 보육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와 보육교직원의 활동 장려 등을 통한 양육친화적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10월 넷째주를 보육주간으로 한다.</p> <p>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육주간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·홍보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.</p>
<p><신 설></p>	<p>제27조(표창) 시장은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보육교직원 또는 보육발전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「서울특별시 표창 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</p>